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문대림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2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뿐 아니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되고 있음.

현재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등 가설건축물에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이나 타 용도 일시사용 등의 절차가 불필요함.

한편, 최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7.25.), 시행(2024.7.26.)으로 수직농장이나 컨테이너형 작물재배사 등 스마트작물재배시설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은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 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타용도 일시사용이나 전용 절차 없이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움.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별도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 행정 절차(타용도 일시사용 등) 없이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작물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스마트작물 재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 사용기간을 최대 16년까지 확대하도록 한 「농지법」 개정규정이 최근 시행('24.7.)된 점,

농식품부가 수직농장 등의 농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정 지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한정하여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24.8~12월)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